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7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직급	직 렬(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7급	수 의(수 의)	33명	용인 2, 성남 1, 안산 1, 화성 1, 남양주 1, 평택 1, 의정부 1, 시흥 1, 김포 2, 광명 1, 광주 1, 군포 1, 이천 4, 오산 1, 하남 1, 양주 1, 안성 1, 포천 2, 여주 2, 양평 2, 가평 2, 연천 3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함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원서접수 시에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 주 지 : 제한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은 기간 중 09:00 ~ 21:00)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2. 5.(월) ~ 2. 7.(수) [취소마감일 : 2. 10.(토) 21:00]	2018. 2. 14.(수)	2018. 2. 20.(화)	2018. 2. 23.(금) ~ 2. 24.(토)	2018. 3. 5.(월) 전·후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에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8. 2. 5.(월) ~ 2. 7.(수)] 중 09:00~21:00

- (3)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표준안에 따라 **사진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합니다.
- (5) **응시번호 확인 및 응시표 출력은 2018. 2. 13.(화)부터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면허·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서류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제1차 시험(서류전형)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031-8008-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